

준강간치상 징역 5년 확정 사례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주점과 노래타운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쭈셔 질벽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질벽, 질입 찰과상 및 열상을 입게 한 사안

2. 관련 법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과 약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기억을 잃기 전후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진술과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피와 소변에서 디아제팜, 노르디아제팜, 로라제팜 등의 성분이 각 검출되었다. 디아제팜, 노르디아제팜, 로라제팜은 신경안정제이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